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원”을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문화원”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광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문화원”으로, “법령”을 “조례”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을 “(재산의 출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를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금고” 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 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2항 중 “대해” 를 “대하여” 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민” 을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지원방법” 을 “지원 방법” 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가 위탁하는 사업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비치하고” 를 “갖추어 두고” 로,

“관계증빙서류” 를 “관계증명서류” 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37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로, “하거나 서울특별시광진구공무원” 을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장부·서류 그” 를 “장부·서류 또는 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결” 을 “검사 결”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중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를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원</u>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 (목적) ----- ----- ----- ----- <u>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문화원</u>----- ----- -----.</p> <p>제2조 (정의) “<u>광진문화원</u>”(이하 “<u>문화원</u>”이라 한다)이란 「<u>지방문화원진흥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u>의 인가를 받고, <u>서울특별시 광진구</u>(이하 “<u>구</u>”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u>문화원</u>을 말한다.</p>
<p>제2조(적용범위) <u>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원</u>(이하 “<u>문화원</u>”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p>	<p>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u>문화원</u> ----- ----- ----- <u>조례</u>----- -----</p>

바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서

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설
립·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
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
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
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
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
을 서울특별시광진구금고에 반
납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생략)

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

-----.

제4조 (재산의 출연 등) ①서울특

별시 광진구청장-----

-----.

②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

법」 제16조-----

-----.

제5조(출연금의 귀속)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서울특별시광진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생략)
②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①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대하여 -----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 방법 -----

-----.

제9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

-----.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 다)의 발굴·수집·조사·연

<p>3. <u>지역 문화행사의 개최</u></p> <p>4. <u>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u></p> <p>5. <u>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u></p> <p>6. <u>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u></p> <p>7. <u>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u></p> <p>8. <u>영상물 문화사업</u></p> <p>9. <u>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 복지 사업</u></p> <p>10. <u>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u></p> <p>11. <u>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u></p> <p><u>제9조·제10조</u> (생략)</p> <p><u>제11조</u>(회계관리 등) ① (생략)</p> <p>②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p>	<p><u>구 및 활용</u></p> <p>3. <u>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u></p> <p>4. <u>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u></p> <p>5. <u>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u></p> <p>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p> <p>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p> <p>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가 위탁하는 사업</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u>제10조·제11조</u>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p> <p><u>제12조</u>(회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	--

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 ①구 청장이 「민법」 제37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

----- 갖추어 두고 -----

----- 관계증명서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하거나, 소속공무원 -----

----- 장부·서류 또는 그 -----

②----- 검사 결과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p><u>「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u>에 따라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14조</u> (생략)</p>	<p><u>「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u>----- ----- --.</p> <p><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p>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박선영 (☎02-450-757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광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출연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설립·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이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가 위탁하는 사업

제10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출연금 등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이 「민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규명	「지방문화원진흥법」
	<p>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p> <p>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p> <p>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p> <p>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p> <p>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